2.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5,417조 1997. 12. 13.

주 요 골 자

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국제선박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시점에서 전액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후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액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새로 취득한 선박의 양도시점까지 부과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2)

나.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내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및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등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50퍼세트 감면받거나 구조조정 당시 100퍼센트 면제를 받고 추후 과세하는 과세이연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 사업자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함께 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소득세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양도조정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31조 내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제70조 및 제71조)

다.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법 제40조의 3)

라. 지금까지는 배당소득을 통합과세하는 경우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의 이중부담을 조정해 주기위하여 법인단계에서 낮은 법인세율인 16%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액에서 배당세액 공제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실제 법인세부담율을 기준으로 부담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93조의2)

마.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신용카드 거래 금액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매출액 증가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가가치세 내부세액에서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과표양성화를 유도함.(법 제100조의3) 〈법제처 제공〉

개 정 이 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등을 개선하고, 판매 등을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 사용함으로써 거래자료가 객관적으로 노출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줌으로써 과세양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조를 제7조로 하고, 동항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특별부가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로 본다.

7. "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자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종전사업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년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사업자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text{과세이연금액} = \text{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times \frac{\text{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text{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제4조제4항 단서중 "통합이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를 "통합,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 또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제12조제1항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

로 하고, 동조제2조 및 동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각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조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3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년도의 종합소득금융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경영투자신탁(이하 이 항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변경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조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조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경매하는 경우
3. 제1항제3조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24조의2(국제선박 양도수익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수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수익을 세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한내에 세금에 산입한 금액을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해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세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수익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선박취득명세서 및 선박취득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항중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중 "감면"을 "이월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법제2항중 "범위와 요건 및 제1항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계산"을 "범위 및 요건"으로 하고, 동법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 본문·제8항 및 제9항중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을 각각 "통합법인"으로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연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의 제목 중 "감면"을 "이연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연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별적용신청"을 "이월과세적용신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기업자가 제조업, 유통·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 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을 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33조의2제4항 및 제33조의3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각각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2장제5편에 제40조의3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각각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2장제5편에 제40조의 3 및 제4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지연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제1항 단서의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징수한다.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각세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 각세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면제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수익의 손금산입 등) 1.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수익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것일 것
2. 현물출자일부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99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회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으로 계상할 것
4.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수익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내

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수익의 계산,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 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단서·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배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한다.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 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내의 본사 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

는 방법

2. 수도권내의 본사 양도가액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제52조제6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등) ①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기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본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2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6호중 "1997년 12월 31일"을 "199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6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제6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진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유통개선지원"이라 한다)

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 금액(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수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개선지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제3항 및 제65조제5항중 "제31조제6항"을 각각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68조를 배제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이하 "구목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목장(이하 "신목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사업용고정자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목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토지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①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사업용고정자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목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토지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

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제73조제3항·제74조제3항 및 제74조의2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각각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를 "(특별부가세감면등의 배제)"로 하고, 동조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감면·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으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를 "(양도소득세감면등의 배제)"로 하고, 동조중 "감면"을 "비과세·감면·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으로 한다.

제80조의4제1항 본문중 "증권저축중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을 "증권저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중 연간 총합여액의 100분의 3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 또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 한다.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2항 종합소득과세기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5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배당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거주자의 배당소득중 법인세부담율이 100분의 16을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가산금액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배당소득×법인세부담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담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0절에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심요경비산입근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과세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당해 과세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년도의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년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③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합계한 금액이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8조의3(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년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

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 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율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천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제99조제5항중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로 한다.

제100조제1항제6호중 "농업경영 및 농작업"을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중 "기자재"를 "기자재와 제99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유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 한다.

제10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내부세액의 차감) ①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연내하여 6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내부세액에서 차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당해 시스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에 의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산 또는 용역의 가액중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매입액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경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

내부과액×

당해 과세기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

$$\text{직전 과세기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 \over \text{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times \frac{50}{100}$$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

$$\text{내부과액} \times \frac{\text{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 - \text{직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text{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times \frac{50}{100}$$

3.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자

$$\text{내부과액} \times \text{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times \frac{\text{당해 과세기간의 공공기관매입액비율} - \text{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times \frac{\text{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기관매입액비율}}{\text{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times \frac{50}{100}}{10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text{내부과액} \times \text{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 \frac{\text{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text{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times \frac{50}{100}$$

④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시점정보경영시스템에 의한 공급차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내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⑤제1항 각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중 하나만을 전담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⑥제1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세액 경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제10호중 "어민"을 "어민(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1조의2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재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7.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재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

6.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안 제118조제1항제1호중 "제48조"를 "제48조·제61조의2"로 한다.

제1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제5조 내지 제7조·제9조 내지 제11조·제2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1조제7항 내지 제9조·제32조제8항·제34조·제37조·제45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88조·제93조·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이하 "처분가능합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사업년도의 수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수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4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종전의 제1호)중 "동조제3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호)중 "제123조제4항을 "제123조제6항"으로 한다.

1.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별표 제19호 및 제83호를 각각 이제한다.

법율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중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 을 제1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 로 한다.

법률 제5163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1997년 12월 31일" 을 "1998년 12월 31일" 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예)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2조의2조2항 및 제3항 ·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세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선박 양도수익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4항 · 제24조의2 및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소득등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①이 법 시행전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지원을 요청한 부실채권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하여는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3

월 31일 이전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회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치계획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공공법인에 관한 적용예) 별표 제19호·제8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61조의2 및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부산입특례에 관한 적용예)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예)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가가치세등에 대한 적용예) ① 제99조제5호·제100호 및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 또는 차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예) 제113조제1항제3호0104제7호 및 제114조제1항제줎104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예)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제68조·제70조 및 제71조(제7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양도가액의 실예, 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

에 사업전환전의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대도시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내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에 수도권내의 본사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0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구목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1조(제7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 또는 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공장용 토지등 또는 종전시설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15조(증권거래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주식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액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95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98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경

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액	적 용 예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년도	1999년 1월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년도
100억원이하	1만분의 30	1만분의 3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3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0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500억원초과	1조1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6	9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체(농어촌발전특별부가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을 "제81조제1항제4호·제81조의2 또는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주택회보